서 울 특 별 시

1453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748 / 전송 733-9535~6

문서번호 시설 30310 - 1025
시행일자 92.11.14
(경유) (제1안)
수신 내부결재
참조

취급		시 장	
보존			
부 시 장	전 결		
도시계획국장		법무담당관 회계심사계장 시설계획1계장	
시설계획과장			
기안	이 항 구		협조

제목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

1. 도계01254-718(92.10.30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현재 건설중인 북부간선도로 노선중 도시계획시설 미결정된 성북구 종암동 115 ~ 노원구 공릉동 284번지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하고자

3. 동 도시계획(안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코자 합니다.

가. 공람공고계획

(1) 게재문안 : 별첨공고안

(2) 게재방법 : 일간신문 2개사(조. 석간 각1개사)

(3) 공람기간 : 92.11. - 92.11. (14일간)

(4) 소요예산 : 954,800원 (2단 × 7㎝ × 31,000원 × 2개사 ×1.1)

(5) 예산과목 : 건설사업비, 도시계획, 시설계획, 수용비 및 수수료

첨부 : 도시계획 공고문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공보관

제목 : 도시계획(안)일간신문 게재 공고 의뢰

1. 우리시에서 입안하는 별점 도시계획(안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의2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자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가. 게재문안 : 별 첨

나. 게재방법 : 일간신문 2개사 (조. 석간 각1개사)

다. 공람기간 : 92.11. - 92.11. (14일간)

라. 규 격 : 2단 × 7㎝

마. 예 산 액 : 954,800원

첨부 : 공람공고문 1부. 끝.

도 시 계 획 국 장

(제3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도시계획(안) 공람에 따른 조치

1. 우리시에서 입안하는 별첨 도시계획(안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고,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입안에 반영코자 하니,

2. 구청장은 별첨 공고문안을 참조하여 입안사항을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홍보하고,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람.

첨부 : 공람공고문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1992 11 19
부시장

수신처 : 중랑, 성북, 노원구청장

(제4안)

수신 : 도로국장

참조 : 도시계획과장

제목 : 도시계획(안)공람공고 통보

1. 도계01254-718(92.10.30)호와 관련임니다.

2.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(안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의2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공람공고문 1부. 끝

도 시 계 획 국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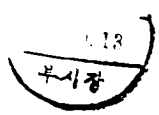

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 -306 호

도 시 계 획 (안) 공 람 공 고

1.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북부간선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도시계획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공고 합니다.

2.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람기간 : 1992.11. - 1992.11.
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(731-6346~9), 종랑구 도시정비과(490-3385~7), 성북구 도시정비과(920-3385~8), 노원구 도시정비과(950-3384~7)

1992.11.

서 울 특 별 시 장

1) 도시계획시설결정(안)

시설명	위 치	규 모	비 고
도 로	성북구 종암동 115-58 ~ 노원구 공릉동 284-2	B=19~31M L=4,217M	북부간선도로신설 (3차구간)

2) 관계도면 : 공람장소 비치도면 같음. 끝.

부시장